

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2. 7. 12 선고 2022가단2119 판결 [임차권존재확인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B

변 론 종 결 2022. 6. 7.

판 결 선 고 2022. 7. 12.

주 문

1.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인 C에 대해 보증금 3,500만 원, 임대차기간 2019. 5. 10.부터 현재까지인 임차권을 보유하는 사람은 원고임을 확인한다.
2.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적용법조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(공시송달에 의한 판결)

판사 김성환

별지